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계약직 직원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2년 9월 14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93 호

군포도시공사 계약직 직원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계약직 직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“(채용계약서)”을 “(근로계약서)”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전문계약직 및 강사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서(이하 “계약서”라 한다)는 표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준용한다. 다만, 상호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황 기 성 (3 9 0 - 7 6 1 5)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채용계약서) ① 전문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(이하 “계약서”라 한다)는 “별지 제1호서식”에 의하고, 강사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(이하 “계약서”라 한다)는 “별지 제2호서식”에 의한다. 다만,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	제6조(근로계약서) ① 전문계약직 및 강사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서(이하 “계약서”라 한다)는 표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준용한다. 다만, 상호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
[별지 제1호 서식] 일반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 군포도시공사 계약직직원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도시공사사장을 “사용자”라 하고, 계약직 직원을 “근로자”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. (생략)
개정안
[별지 제1호 서식] <삭제>

현행
[별지 제2호 서식] 강사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 군포도시공사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과 피 사용자(이하“근로자”라 한다)는 아래조건과 약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“사용자”와 “근로자”는 약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. (생략)
개정안
[별지 제2호 서식] <삭제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근로기준법

제17조(근로조건을 명시)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임금
2. 소정근로시간
3. 제55조에 따른 휴일
4.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

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